

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0의7] <개정 2026. 4. 30.>

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
(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)

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	The approved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with authorization No ... ¹⁾ declares that,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, these goods are of ... ²⁾ with preferential origin of the Korea-Ecuador SECA.” (Place and date³⁾) (Signature of the exporter; in addition, the name and sur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)⁴⁾
작성방법	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,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합니다. 1)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. 2) 물품의 원산지(Korea 또는 Ecuador)를 적습니다. 원산지는 KR 또는 EC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. 3)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. 다만,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 4)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, 서명을 합니다. 다만, 협정 제3.18조제5항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 약속을 제출한 경우 서명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